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법인지방소득세 본점법인 특별징수세액 환급결의

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과 관련 특별징수지에서 지급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하고자 합니다.

- 근거조항 : 지방세법 제103조의62 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】
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36조 【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등】
- 환급대상 : 아이엔지생명보험,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아메리카인터내셔널어슈어런스컴파니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
- 환급금액 : 30,458,035,000원

- 붙 임 : 1. 본점환급신청결의서 1부.
2. 환급신청내역서 1부. 끝.

주무관	이정아	지방소득세 2팀	이원봉	세무2과장	박해선	기획재정국장	05/30 한수경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

협조자